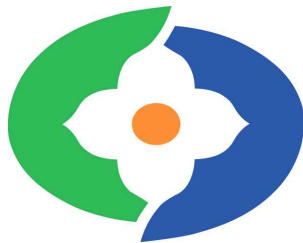


2018년도  
양산면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 기 획 감 사 실 )

- 2018년도 양산면 -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 감사내용 》

- 기 간 : 2018. 4. 2. ~ 4. 5. (4일간)
- 대상기관 : 양산면
- 감 사 반 : 기획감사실장 외 5명
- 감사범위 : 2015. 6월부터 추진한 업무전반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실태
  - 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등
  - 인허가 등 민원처리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18건
  - 행정상 조치 : 18건(주의 11, 시정 7)
  - 재정상 조치 : 회수 2건 633,460원
  - 신분상 조치 : 없음

### ■ 수범사례

- 소통하는 금요일 운영
  - 특수시책으로 매주 금요일 소통하는 날로 지정 운영하여 담당 직원이 마을별로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및 군정 홍보사항을 적기에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등 군민에 대한 무한 서비스 행정을 펼치고 있음.

# 주요 지적사항

연번	부서명	지 적 사 항	처분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합계	총 무 7 주민복지 3 산 업 8	18건	주의 11 시정 7		회수 2건 / 633,460원
1	총 무	◦ 호탄 벚꽃문화축제 보조금 집행 및 정산보고 부적정	주의		
2		◦ 여비지출결의서 영수확인 누락	주의		
3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소홀	주의		
4		◦ 회계관계공무원 직무대리 지정 소홀	주의		
5		◦ RFID 물품 전자태그 발행 및 부착 소홀	시정		
6		◦ 상품권 수불부 미작성	시정		
7		◦ 공용차량 이용 직원의 출장명령 절차 미 이행	주의		
8	주민복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소홀	시정		
9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통지 소홀	주의		
10		◦ 장애인 표지판 발급 부적정	주의		
11	산 업	◦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	시정		
12		◦ 소규모사업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77,460원
13		◦ 준공신고서 검토·확인 소홀	주의		
14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사감독 소홀	시정		회수 556,000원
15		◦ 2017년 버 우량종자대 지원사업 보상금 지급 부적정	주의		
16		◦ 산불감시원 운영관리 소홀	주의		
17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지연·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	시정		
18		◦ 이륜자동차사용신고 인지 전자적 소인처리 소홀	주의		

【 일련번호 : 1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호탄 벚꽃문화축제 보조금 집행 및 정산보고 부적정

【현 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일자	사업비(정산분)			보조사업자
		총액	보조금	자부담	
제1회 호탄벚꽃문화축제	2016. 4. 10	8,000	6,300	1,700	호탄벚꽃문화축제추진 위원회(대표 ★★★)
제2회 호탄벚꽃문화축제	2017. 4. 9	7,000	6,300	700	

### 【위법부당사항】

- 호탄벚꽃문화축제는 호탄 벚꽃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지역관광자원화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화합을 위해 2016년도부터 2회에 걸쳐 호탄벚꽃문화축제추진위원회(대표 ★★★)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추진하였음.
- 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해야 하며,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에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 받아야 하며,
-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 2016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금(1,700천원) 예치 확인 없이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보조사업은 사업완료한 날(4.9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40여일이 지난 7. 24일 정산보고를 하였음.
-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에는 보조금 집행현황 작성 시 보조금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해야 함에도,
  - 2016년 정산보고서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로 ○○○○○○ ○○ 및 □□□□ 등 6개 업체에 총1,102,600원을 통장인출을 하였으나 정산서에는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가 없으며, 2017년도 정산보고서 또한 보조금 통장에서 19건에 3,192,000원이 인출되었으나 정산서에는 지출내역 및 지출증빙서류가 없는데도 보완없이 정산서를 군에 제출하였음.
- 또한 2016년도 보조금 정산 시 아래와 표와 같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제출된 정산보고서와 양산면에서 영동군으로 제출된 정산보고서의 자부담분 및 보조금 통장의 수입과 지출내역이 서로 상이함에도 확인 절차 없이 정산보고 하였음.

면사무소 정산보고서			축제추진위원회 정산보고서			보조금 통장 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수입	지출	잔액
8,935,000	6,300,000	2,635,000	8,249,240	6,300,000	1,949,240	10,156,000	9,351,840	804,160

- 특히, 국악문화체육실에서는 제2회 호탄벚꽃문화축제 보조금 정산결과보고서 ‘행사기획 및 추진과정이 미흡하였으며,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미숙하고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라고 지적하였음에도 2018년도 제3회 호탄벚꽃문화축제 보조금 교부결정시 전년도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없이 전년도와 똑같은 교부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처분내용】**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여비지출결의서 영수확인 누락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제126조(회계문서의 날인)에 따르면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으나, 다만 강의, 감시, 당직,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양산면에서는 다수의 기본업무추진 여비지급 지출결의서 여비명세서의 영수인란에 서명을 누락하는 등 회계문서의 날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소홀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는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적 적용대상이며 일정기간 (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가능하며, 현금영수증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
- 양산면에서는 2017.12.26.일 주민자치 운영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매출전표에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았고, 2017.12.05.일 11월 초과근무자 급식비 (지급명령번호 제504호)지급 및 2017.12.28.일 12월 초과근무자 급식비 (지급명령번호 제 539호) 지급 현금영수증 사용건에 대해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절차 준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시 사용자의 실명을 기재하고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회계관계공무원 직무대리 지정 소홀

【현 황】

○ 근무상황 내역

회계직명	직 급	성 명	근무상황내역			직무대리 지정여부
			종별	기간	사유	
지출원	○○★급	◆◆◆	휴가	2017.08.16 09:00 ~ 2017.08.18 18:00	하계휴가	부
지출원	○○★급	◆◆◆	휴가	2018.01.04 09:00 ~ 2018.01.05 18:00	병원진료	부
재무관	◎◎■급	▲▲▲	장기재직 휴가	2017.12.11 09:00 ~ 2017.12.15 18:00	장기재직휴가	부
재무관	◎◎■급	▲▲▲	휴가	2017.10.24 09:00 ~ 2017.10.27 18:00	가사정리	부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르면 읍·면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읍장·면장으로 하고 지출원과 수입금출납원은 부읍장·부면장으로 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출원이 아닌 직제순위에 따른 담당으로 지정하고 있음.
-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하되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음.
- 영동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지정대리)에 의하면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면장이 문서로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출원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양산면은 상기 현황과 같이 재무관이 휴가로 공백이 발생하여 재무관,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겸직되지 않게 직무대리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지출원이 휴가로 공백이 발생하였음에도 지출원 직무대리를 문서로서 지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회계관계공무원 부재시 직무대리 지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RFID 물품 전자태그 발행 및 부착 소홀

【현 황】

○ 전자태그 미부착 현황

자산번호	분류번호	물품명	규격명	취득일자	취득수량	취득단가(원)	물품보관장소	취득적요	태그관리여부	태그발행여부
201801001638 ~ 201801001739	56101542	접이식 의자	접이식의자 대신산업 DS8144 500×560×79 5mm	'18.01.29	102	6,426,000 (63,000/개)	양산면 사무소	대회의 실 의자 구입	지정	미발행
201801001740 ~ 201801001757	56112102	작업용 의자	작업용의자 대신산업 DS8096 570×670×95 0mm	'18.01.29	18	2,484,000 (138,000/개)	양산면 사무소	대회의 실 의자 구입	지정	미발행
201801001483	40101808	스토브	난로 대상하이원 DSP1-1502 17.4kW 원적외선/등유	'18.01.19	1	884,750	선별장	선별장 열풍기 구입	지정	미발행

【위법부당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양산면은 상기 [현황]과 같이 취득한 물품에 대해 RFID 물품 전자태그발행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태그발행 및 부착을 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상기 [현황]의 취득 물품에 대해 태그발행 및 부착을 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상품권 수불부 미작성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 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양산면에서는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생일자 상품권을 2016년 1만원권 52매, 2017년 1만원권 52매, 2018년 1만원권 64매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매년 초에 영동사랑상품권을 일괄 구입하여 생일자에게 4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나, 위 집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수불부 작성 및 기록 없이 유가증권을 관리하고 있음.

【처분내용】

- 상품권 수불부를 작성 관리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용차량 이용 직원의 출장명령 절차 미 이행

【현 황】

○ 공용차량 이용 직원의 출장명령 절차 미 이행 현황

사용일시	출장횟수	공용차량명	운행자	용무(운행)	비고
2017.12.2. 10:00~18:00	1회	○○도○○○○	○○☆급 ■ ■ ■	산불감시	
2017.12.3. 10:00~18:00	1회	○○도○○○○	○○☆급 ○○○	산불감시	
2017.12.10. 10:00~17:00	1회	○○도○○○○	○○☆급 ◆ ◆ ◆	산불감시	
2018.2.3. 09:00~18:00	2회	○○도○○○○	○○☆급 ★ ★ ★	산불감시	
2018.2.4. 09:00~18:00					

※ 토요일, 공휴일 출장내역 및 차량운행일지 참고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에 따르면 각급 기관의 장은 영동군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조(출장의 절차)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직원이 근무지 내 출장을 할 경우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인 면장의 출장명령 허가를 받고 출장을 하였어야 하며,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등의 명확성을 위해 출장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 2017. 8. 24. ~ 현재까지 ○○☆급 ■■■ 등 4명은 각각 산불감시 업무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면서 사전 출장명령 허가 없이 출장을 실시하는 등 근무상황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공용차량 이용시 출장명령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복무관리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소홀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에 의하면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양산면에서는 2016년 1월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해촉 및 신규위촉으로 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홈페이지에 변동된 주민자치위원(고문 포함)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고 있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변동된 주민자치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통지 소홀

【현 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지연 내역

연번	성명	생년월일	통지일	통지방법	관련문서
1	이**	00.12.**	2018.01.03	등기우편	양산면-77(2018.01.03)
2	이**	00.12.**			
3	강**	00.12.**			
4	황**	00.09.**	2017.10.12	등기우편	양산면-12081(2017.10.12)
5	최**	00.09.**			

【위법부당사항】

-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따르면 군수는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르면 군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그 발급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전출 등으로 통지서를 내줄 수 없으면 이를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하거나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하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를 교부할 때에는 17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통지서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

급대상자에 대해 17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날까지 통지서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통지를 지연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한 발급 통지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장애인 표지판 발급 부적정

【현 황】

○ 장애인표지판 발급 부적정 현황

대 상 자	장애유형	주장애등급	표지발급유형	보행상장애여부	발급일자	비고
강**	지체(상지기능)	2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부	2017.02.02	
김**	청각(청력)	4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부	2017.03.15	
김**	신장	5	장애인 본인용 주차가능	부	2017.05.17	

【위법부당사항】

- 「2017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 (Ⅱ)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에 의하면 자동차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칭과 보행상 장애 유무(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적용) 등에 따라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양산면에서는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시 보행상 장애가 없는 강\*\* 외 2명에 대해서 「주차가능」 표지판을 발급하는 등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자에게 표지판을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

【현 황】 따로붙임

### 【위법부당사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10조(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의 연장) 및 영동군 옥외광고물관리 조례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항에 따르면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기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양산면 ○○리 ☆☆☆번지 ▲▲▲▲ 외 17건에 대하여 감사 일 현재까지 표시기간 연장안내를 하지 않는 등 옥외광고물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처분내용】

- 표시기간 연장안내를 하지 않고 있는 ▲▲▲▲ 외 17건에 대해 즉시 표시기간 연장안내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미 안내 및 미 조치 현황】

연 번	광고주		광고물 현황			최 초 허가일	표시기한	비고
	성명	주소	광고내용	종류	수량			
1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	돌출간판	1	2013-07-18	2016-07-17	
2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1	2011-07-01	2015-06-30	
3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1	2012-06-29	2015-06-28	
4	-	충청남도 계룡시	-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1	2012-06-23	2015-06-22	
5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1	2012-07-14	2015-07-13	
6	-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	지주이용 간판	1	2012-06-15	2015-06-14	
7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1	2012-10-09	2015-10-08	
8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1	2012-10-08	2015-10-07	
9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	지주이용 간판	1	2011-06-16	2014-06-15	
10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	지주이용 간판	1	2009-12-01	2012-11-30	
11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1	2009-12-01	2012-11-30	
12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	지주이용 간판	1	2009-07-01	2012-06-30	
13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1	2009-07-01	2012-06-30	
14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	지주이용 간판	1	2009-06-29	2012-06-28	
15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1	2009-06-23	2012-06-22	
16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	돌출간판	1	2009-06-23	2012-06-22	
17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	지주이용 간판	1	2005-07-29	2008-07-28	
18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1	2006-09-29	2009-09-29	

【 일련번호 : 12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77,46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소규모사업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현 황】

○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현황

공 사 명	사업량	도금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감액금액(원)			비고
							당초	변경	정산	
◎◎리 농로 및 배수로설치공사	배수공 86m 포장공 85m	10,368	▲▲▲▲(주) ◎◎◎	17.09.19	17.09.20	17.10.19	187,780	265,240	77,460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4-3-6 (21)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보전비의 세부산출 비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별표16”의 기준에 의거 산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17.09.19. ▲▲▲▲(주) ◎◎◎과 계약하여 완료된 「◎◎리 농로 및 배수로설치공사」 건에 대하여 준공 시 제출된 보험료 감액동의서는 착공 내역서에 반영된 원가계산 제비율 항목에 대한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 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비에 대한 사용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정산없이 77,46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금액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과다지급한 77,460원에 대해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소규모 사업의 정산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3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준공신고서 검토·확인 소홀

【현 황】

○ 폐기물처리 증빙자료 미제출 현황

공 사 명	사 업 량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예정일)	비고
◎◎리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배수공 80m 구조물공 60m 포장 145m 폐기물 5ton	9,692	(주)★★★★ ■■■	16.04.25	16.04.26	16.06.04	
☆☆리 농로 및 배수로설치공사	배수로 86m0 포장 85m 폐기물 5ton	10,368	▲▲▲▲(주) ○○○	17.09.19	17.09.20	17.10.19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공사관련 서류 검토·보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준공단계에서 준공검사원 등 관련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지침 제131조(시공사 제출서류의 검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하는 준공검사원의 증빙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함.
- 지침 제161조(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원을 접수 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 2016. 04. 25. (주)★★★★ ■■■와 계약하여 완료된 「◎◎리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외 1건에 대한 준공신고서를 접수하면서 공사

와 관련된 건설폐기물신고필증의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보완 지시 없이 준공처리 하는 등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준공신고서 접수시 제출서류 검토 등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4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556,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사감독 소홀

【현 황】

공 사 명	사업량	도급액 (천원)	도 급 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액(천원)			비고
							당초	변경	정산	
☆☆리 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포장공 105㎡ 배수공 48m	12,987	○○○○(주) ★★★	15.06.16	15.06.17	15.06.26	12,987	12,431	556	

###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관계서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에 의하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15. 06. 16. ○○○○(주) ★★★과 계약하여 완료된 「☆☆리 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건에 대하여 배수로 덮개로 스틸그레이팅 설치 19m가 설계내역에 반영되었으나 15m만 시공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하여 556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과다지급한 556,00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각종 사업의 공사감독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5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2017년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 보상금 지급 부적정

【현 황】

○ 2017년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 보상금 지급 현황

마을명	신청자명	벼 재배면적(㎡)	지급액(원)	비고
계			10,720	
양산면 ◎◎리	◆◆◆	777.3	6,160	
양산면 ■■리	★★★	575.0	4,560	

【위법부당사항】

-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은 쌀 소비량 감소 및 가격하락에 대응한 농업인 소득안정을 기하고 순도높은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지원으로 지역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우수한 고품질 쌀 생산 및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매년 벼 재배농업인에게 도비 30%, 군비 7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0.1ha 이상의 벼를 재배하고 있는 충북도내 거주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공부확인 및 현지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ha당 79,350원의 단가(㎡당 7.935원)를 재배면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양산면에서는 2017년도 벼 우량종자 지원사업 보상금 총 260농가에 9,587,870원을 지급하면서 벼 재배면적이 0.1ha미만인 경작자 양산면 ◎◎리 ◆◆◆ 외 1인에게 총 10,72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6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산불감시원 운영관리 소홀

【위법부당사항】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르면 운영기관의 장은 감시원을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감시원 조편성, 임무부여 및 관리·감독, 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운영기관의 장은 관할구역 내 산림면적 및 분포, 산불위험정도 등을 감안하여 감시원 5명 내지 10명 정도로 조(組)를 편성하고, 감시원 중에 조장을 임명하여 조원을 관리·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제9조 제2항에 따라 조장은 자신의 담당구역에 대한 산불감시활동과 병행하여 조원의 근무상황 확인·감독,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전달 등 임무를 수행하고 이를 조장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양산면에서는 2017년 가을철 산불 감시원 및 2018년 봄철 산불감시원을 운영관리하면서 책임담당구역에 따라 산불감시원을 편성하고 각 조별 조장을 임명하였으나 산불감시원 조장이 조장으로서 수행한 임무를 조장근무일지에 기록하도록 지도하지 않는 등 산불감시원 운영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산불감시원 운영관리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7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지연·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

【현 황】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지연·미가입자 현황

납부자	주소	차 량번호	최초과태료 (대인1/대물)	전 보험만료일	현 보험가입일	미가입 일수
○○○	양산면	☆☆☆☆차 ○○○○	6,000/3,000	2017.10.25	2017.10.30	4
★★★	양산면	☆☆☆☆차 ○○○○	0	2017.6.27	미가입	
▲▲▲	양산면	☆☆☆☆차 ○○○○	0	2017.7.29	미가입	

【위법부당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군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지체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등)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영동군 사무위임 규칙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별표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와 관련되어 권한이 재위임된 업무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업무는 읍·면장에 재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양산면에서는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지연 가입자 ○○○ 및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 외 1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

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감사일 현재까지 고지서 발급조차 하지 않는 등 과태료 부과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지연·미가입자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후 미납시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이륜자동차 관리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8 】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륜자동차사용신고 인지 전자적 소인처리 소홀

【현 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현황

신고일	신 청 인		이륜차 현황		
	주 소	성 명	기 종	제 작 년 도	배기량 (cc)
01.18	영동읍	○○○○	CA110	2005	108.9
02.21	양산면	-	BIZJET100	2016	97
03.06	양산면	-	HH100T-7C	2015	102
04.10	양산면	-	CAH0B	2014	108
04.10	양산면	-	CA110V	2017	108
04.11	양산면	-	BMW S1000R	2016	999
04.25	양산면	-	HJ100T-7C	2016	102
06.05	양산면	-	VF100	2017	102
06.07	양산면	-	CA110S	2012	108
06.15	양산면	-	CA110V	2014	108
06.23	양산면	-	MINUET PLUS	2018	97
06.28	양산면	-	대림코디	2007	49
07.06	양산면	-	CA110	2004	108.9
08.28	양산면	-	HH100T-7C	2014	102
08.29	양산면	-	MINJET PLUS	2017	97
09.05	양산면	-	SH100	2007	99.7
09.13	양산면	-	HH100T-7C	2015	102
09.29	양산면	-	VF100F	2018	99.7
11.14	양산면	-	QT	2018	71.8
12.22	양산면	-	CBR 125RW	2012	124

【위법부당사항】

○ 인지세법 제8조(납부)에 따라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조(소인)의 규정에 의하면 전자수입인

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 (www.e-revenue-stamp.or.kr)에 전자 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양산면에서는 현황에서와 같이 ◎◎◎ 외 19건에 대하여 전자수입인지를 접수 후 전자적 소인 처리하여 전자수입인지가 “사용” 되었음을 확인했어야 하나 전자적 소인 처리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를 접수한 후 신고·수리 한 사실이 있음.

#### **【처분내용】**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